

대도테크라 협력사 ESG 행동 규범

- 제 1 장 개 요
- 제 2 장 윤리 경영
- 제 3 장 환경 경영
- 제 4 장 노동/인권
- 제 5 장 안전/보건
- 제 6 장 경영시스템
- 제 7 장 부 칙

담 당	SA부서장	PL부서장	총괄본부장	사 장	대표이사

개 정 이 력

번호	제(개)정 구분	개 정 내 용	개정 날짜	비 고
1	제정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2024.07.01	
2				
3				
4				
5				

제 1 장 개 요

제 1 조 【 목 적 】

대도테크라(이하 "회사"라 한다)는 인간 존중, 환경 중시의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며, 협력사를 중요한 사업 파트너로 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급망 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동반성장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이에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 임직원이 윤리적 기준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협력사 행동규범』(이하 "행동규범"이라 한다)을 제정한다.

본 행동규범은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행동규범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본 행동규범의 조항은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라 노동자 기본권에 관한 국제 노동기구 선언, UN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ILO 핵심협약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기반하며 이를 존중한다. 본 규범과 현지 법규의 내용이 상충될 시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본 행동규범은 회사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행동규범의 적용대상인 모든 협력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장 윤리경영

제 3 조 【 투명경영 및 반부패 】

협력사는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에 따라 선물이나 뇌물수수, 횡령 및 특정 가치를 약속/제안하거나 허가/수령하는 모든 부패 행위를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제재 절차를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협력사는 이 모든 과정에 적극적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제 4 조 【 이해상충 방지 】

1. 협력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협력사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 3 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약속 받는 행위)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제안·허가·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 5 조 【 불공정 거래 방지 】

1.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협력사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서는 아니 된다.
4. 협력사는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 3 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 6 조 【 위조부품 방지 】

1. 협력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2. 협력사는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경우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3. 협력사는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 【 수출제한 준수 】

1. 협력사는 수출제한과 관련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수출제한, 경제 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개인과 거래해서는 아니 된다.
3. 협력사는 수출제한, 경제 제재 관련 법률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필요 시 회사의 현황 파악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8 조 【 정보보호 】

1.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하위 협력사)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유출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 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협력사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서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 지적재산 보호 】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하위 협력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협력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이 침해 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 10 조 【 책임있는 자재 구매 】

1. 협력사는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적용 받는 법/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환경영향을 저감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조달하는 원부자재 생산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여야 하며, 원부자재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임직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협력사는 제품에 포함된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등 분쟁광물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4. 협력사는 해당 프로세스에 따라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사회·환경적 이슈를 점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협력사는 광물 및 원재료를 주로 취급하는 경우, 해당 광물 및 원재료의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인권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이슈와 관련성이 없음을 자체 확인하거나 대외인증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경영

제11조 【 환경경영 】

1. 협력사는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모든 사업활동 운영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2.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와 폐기, 재활용, 산업용수 관리와 재사용, 온실가스 및 대기배출물질 통제 등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2조 【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

1.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 폐수 관리 】

1.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법적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 대기오염물질 관리 】

1.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현지 법규에 따라 관리 및 처리한 뒤 배출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 폐기물 관리 】

1.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 화학물질 관리 】

1.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협력사는 특정 물질의 사용, 취급을 금지 또는 규제하는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 생물다양성 보호 】

협력사는 지역사회의 생물다양성을 보전.복원.확대하기 위해 사업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의존도를 측정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 감소, 상쇄하기 위한 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노동/인권

제18조 【 차별금지 및 다양성 존중 】

1. 협력사는 채용과 임금, 승진, 보상, 연수 기회제공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결혼 여부, 임신 및 출산, 가족관계,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협력사는 임직원의 모집, 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9 조 【 인도적 대우 】

1.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제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에 고지하며, 자발적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3. 협력사는 작업장의 가혹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을 포함한 가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4. 협력사는 인도적 대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징계 방침과 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방침과 절차를 공지하여야 한다.

5. 협력사는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자유를 보장 하여야한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의 결성이 허용 되며,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활동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20 조 【 임금 및 복리후생 】

1.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및 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최저임금, 초과 근무시간 보상,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한다.
2. 협력사는 근로자의 임금 기준을 급여내역서나 유사한 서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3.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21 조 【 근로시간 】

1.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관리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임직원이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3.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매 7 일마다 최소한 하루의 휴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22 조 【 아동노동 금지 】

1. 협력사는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동"은 만 15 세, 의무교육이 끝나는 연령, 현지 법령에 따른 법정 고용 최저 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
2. 협력사는 법정 고용 최저연령보다 높은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만 18 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초과근무, 야간근무 포함)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 강제노동 금지 】

1.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임직원의 개인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신분증, 사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정신적 속박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협력사는 신체적/정신적 속박이나 채무관계에 의한 강제노동 등에 관여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보건

제 25 조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1.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안전보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결과 점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 26 조 【 산업 안전 관리 】

1. 협력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방호벽, 긴급장치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협력사는 임직원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4. 협력사의 안전보호구는 임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 27 조 【 비상상황 대응 】

1. 협력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비상사태 발생 시 유형 별 대응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협력사는 상황종료 이후 사태파악 및 평가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4. 협력사는 평상시에도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비상사태 대응역량을 갖춰야 한다.

제 28 조 【 산업재해 및 질병관리 】

1.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29 조 【 안전 진단 】

1. 협력사는 잠재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방지하는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위험성평가 활동을 통해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험도를 파악, 평가 및 관리해야 하며, 생산 설비나 기타 설비의 안전상의 위험을 평가하여 그에 따른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협력사는 이러한 위험은 설계, 엔지니어링, 예방 정비 등을 통한 공학적 개선, 안전한 작업 절차, 지속적인 안전 훈련 및 교육, 적합한 보호구 지급 등 관리적 개선을 통해 통제하여야 한다.

제 30 조 【 보건 관리 】

1.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 표지, 조명, 난방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기숙사에는 적절한 외부인 출입 제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 임직원의 작업공간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경영시스템

제 31 조 【 기업 성명서 공시 】

1.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이행 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이행 의지를 경영진 신년사, 내부지침,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사내에 공유하여야 한다.

제 32 조 【 담당자 선임 】

1. 협력사는 지속가능성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지속가능경영 활동 계획 수립과 이행현황을 감독하는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33 조 【 리스크 점검 】

1.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 34 조 【 교육 및 소통 】

1.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본 행동규범 관련 법률 및 제도에서 다루는 사항을 임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이행성과 등을 임직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3.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이행 의지를 경영진 신년사, 내부지침,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사내에 공유하여야 한다. 또한,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 공개할 것을 권장한다.

제 35 조 【 정보 관리 】

1. 협력사는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현황 및 리스크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별 법령, 산업단체, 사업계약을 체결한 중요 고객사 등에서 해당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법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6 조 【 고충처리 제도 운영 】

1. 협력사는 임직원이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 또는 인지하거나,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 당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임직원이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 보복, 조롱 등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 37 조 【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관리 】

1. 협력사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기획, 설계, 판매, 제조하는데 있어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등 공급망 참여 기업 전반에게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요소를 관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등 공급망 참여 기업이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

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련 리스크 등을 인지한 경우,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등 해당 공급망 참여 기업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38 조 【 규범 준수 】

1. 협력사는 회사 또는 회사 지정한 제3자가 진행하는 정기적인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 시 행동규범 준수여부 및 이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해당 문서는 사업 운영에 대한 실제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3.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에 대한 서면점검 혹은 현장방문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함이나 위반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범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